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24. 11. 5.>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</td><td>처리기간
10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신청인</td><td>성 명
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)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업장 소재지</td><td>사 무 실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 기 장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사 업 장 규 모</td><td colspan="4">대지 : ㎡ 건물 : ㎡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td></tr>
<tr><td>구비서류</td><td colspan="4">1.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2.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. 다만,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3.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</td><td>수수료
30,000원</td></tr>
</table>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)